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2066778 판결 [채권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류정석, 김상만

피고, 피항소인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이석종

변론 종결 2019. 3. 7.

판결 선고 2019. 3. 21.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51852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5,4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다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관련소송에서의 담보제공 자산에 관한 청산가치판단결과에 따라 원고가 매수청구한 채권의 매매대금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나 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등에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만한 기재 내용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경위나 그 계약 내용,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매매의 전제가 된 사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쌍방의 착오가 존재한다거나 원고의 채권매매대금 차액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 기촉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원고 스스로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를 쉽게 변경할 수는 없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C와 같이 피고들을 상대로 적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적어도 계약서 등에 관련소송의 소송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러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3. 12. 11. 매수청구한 채권에는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래의 채권 외에 C이 2013. 7. 29. 매수청구한 C의 B에 대한 채권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소송의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도 재산정(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8, 3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대금이 재산정(증액)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기촉법 제20조 제1항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반대채권자는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찬성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반대채권자)가 2013. 12. 11. 피고들(찬성채권자)을 상대로 매수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서면에는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래의 채권 외에 C이 2013. 7. 29.매수청구를 한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장래에 C의 위 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채권을 매수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도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래의 채권'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나아가 원고도 위와 같이 매수청구 내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대상이 되었던 B에 대한 원래의 채권의 가치가 부당하게 과소평가되었으니 정당하게 평가된 채권가액과 이미 수령한 채권매매대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소장 참조).

2) C의 2013. 7. 29.자 매수청구로 반대채권자인 C과 찬성채권자인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그 매수청구 대상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15134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C의 매수청구 대상 채권이 채권 점유 비율 만큼 원고에게 곧바로 이전되었다거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구 기촉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자기(원고)의 채권'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1)[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로 그 대상 채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다음 찬성채권자 중 실제 해당 채권을 양도받을

채권자를 결정하는 등 그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만 해당 채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제 C은 관련소송이 확정된 후인 2018. 1. 5.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인 피고 한국산업은행에게 찬성채권자(원고와 피고들) 중 C이 매수청구한 채권을 양도받을 채권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을 제4호증). 한편 C이 매수청구한 채권에 대한 매매대금은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모두 납부하였다2)].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김관용, 판사 공도일

1) 구 기촉법 제20조 제2항은 찬성채권자로 하여금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을 매수하도록 하면서 반대채권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에도 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만으로 곧바로 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주석 상법(회사(II)), 한국사법행정학회(제5판, 2014), 152쪽 등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가단5153349 판결).